

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7월 2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7월 1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7월 2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문화국장 송오섭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문화국을 행정안전국으로,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, 도시안전국을 푸른미래도시국으로, 경제환경국을 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고, 건제순을 행정안전국, 기획경제국, 복지가족국, 푸른미래도시국, 문화환경국, 교통건설국으로 함(안 제3조)
-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도시안전과를 주민안전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국에 이동 배치하고,

행정안전국 사무를 조정함(안 제5조)

-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청년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와 함께 기획경제국에 이동 배치하고, 기획경제국 사무를 조정함(안 제6조)
-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, 아동청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, 복지가족국 사무를 조정함(안 제7조)
- 도시재생과를 주거정비과로 변경하여 푸른미래도시국에 이동 배치하고, 푸른미래도시국 사무를 조정함(안 제8조)
- 문화체육과와 부동산정보과를 문화환경국으로 이동 배치함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를 전부개정하고자 함.
 - 전체적인 조직개편 내용은,
 - 개편전 “6국 1담당관 31과, 1소 4과(1분소), 10동(1분소), 182팀” 체제를 “6국 2담당관 30과, 1소 4과(1분소), 10동(1분소), 176팀” 체제로 변경하는 것임.
 - 국·과의 명칭은,
 - 기존 “행정문화국” 을 “행정안전국” 으로
 - 기존 “기획재정국” 을 “기획경제국” 으로
 - 기존 “도시안전국” 을 “푸른미래도시국” 으로
 - 기존 “경제환경국” 을 “문화환경국” 으로 변경하고,
- ※ 건제순을 행정안전국, 기획경제국, 복지가족국, 푸른미래도시국, 문화환경국,

교통건설국으로 함.

- 부구청장 직속으로 “소통담당관” 을 신설하며,
 - 기존 “도시안전과” 를 “주민안전과” 로 변경하여, “행정안전국” 에 이동 배치하고, “행정안전국” 사무를 조정함.
 - 기존 “일자리창출과” 를 “일자리청년과” 로 변경하여, “지역경제과” 와 함께 “기획경제국” 에 이동 배치하고, “기획경제국” 사무를 조정함.
 - 기존 “여성가족과” 를 “가족정책과” 로
 - 기존 “아동청년과” 를 “아동청소년과” 로 변경하고, “복지가족국” 사무를 조정함.
 - 기존 “도시재생과” 를 “주거정비과” 로 변경하여, “푸른미래도시국” 에 이동 배치하고, “푸른미래도시국” 사무를 조정함.
 - “문화체육과” 와 “부동산정보과” 를 “문화환경국” 으로 이동 배치함.
- 참고로, 부칙 제2조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타 조례들의 개정 사항을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명시해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동시에 타 조례들의 개정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검토보고 드리며,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·제출된 안건임을 검토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